

1/2건선거 분식점 운영협약서

제1조 목적

본 협약은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4조에 따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(이하 “부대”라 한다)와 1/2건선거 생활관 내 분식점 운영자 대표 000 (이하 “사용인”이라 한다) 사이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운영 및 관리

- ① 1/2건선거 생활관 내 분식점 운영시간은 10:00 ~ 20:00으로 하며, 무인판매 품목 운영 희망 시에는 24시간 운영으로 한다. “부대”는 “사용인”이 조정을 희망할 때에는 상호 합의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은 무단휴업을 할 수 없으며, 개인사정 등으로 임시 휴업이 필요할 경우 5일전까지 “부대”에 임시 휴업일자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“부대”승인을 얻은 후 3일 이내로 임시휴업 할 수 있다.

제3조 판매품목 및 가격

- ① “사용인”이 운영하는 판매품목 및 가격은 “부대”와 “사용인”이 상호 합의한 [별표]의 내용에 따르며 임의로 품목 및 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.
- ② “사용인”이 품목 또는 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“부대”와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, “부대”는 “사용인”의 조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여야 한다.
- ③ “부대”는 장병의 복리후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“사용인”이 취급하는 품목 또는 가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사용인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한다.

제4조 중도포기로 인한 처리

“사용인”은 개인사정 등으로 사용허가의 중도포기를 희망할 시, 영업 종료 희망일 2개월 전까지 “부대”에 포기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 간담회 및 이벤트 운영 등

- ① “사용인”은 사용허가시설의 운영활성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하여 (분기 또는 반기) 1회 “부대” 주관으로 실시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야 하며, “사용인”은 “부대”가 제시하는 장병 요구사항 및 운영개선 사항에 대하여, “부대”는 “사용인”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긍정적으로 검토 후 조치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은 1/2건설거생활관 분식점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등을 “부대”에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할 수 있으며, “부대”는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 협약의 변경

“부대” 또는 “사용인”이 군사목적, 운영활성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의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협약 조항을 추가, 변경, 삭제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호 날인하여야 한다.

제7조 이의제기 및 분쟁사항의 조정

- ① “사용인”은 “부대”에 협약의 내용, “부대”의 부당한 요구(또는 제한)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 및 분쟁사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부대”는 “사용인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성실히 검토 후 조치하여야 한다.
- ② “부대”는 “사용인”의 이의제기 및 분쟁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부대 복지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다.
- ③ “사용인”은 충분한 의견 진술을 위해 부대복지운영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부대”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“사용인”의 의견 진술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④ 이의제기 및 분쟁 조정에 관한 결과는 상호 서면으로 통보한다.

판매품목 및 가격결정

1. 사용인은 허가 시작일 이전에 판매품목 및 가격표를 사용부대에 제출하여야한다.
2. 최초 판매가격은 복지위원회 승인 후 가능하며, 물가변동으로 인한 가격인상, 인하 요인 발생시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조정한다.
3. 사용인은 이용 장병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가격표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.
4. 사용인은 판매할 상품과 가격의 목록을 사용부대에 통보하여 복지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, 의무 및 자율 판매 품목은 다음과 같다.
가. 취급 품목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구 분	품 목
의무 판매 품목	식사료(김밥, 라면, 우동, 짜장면, 돈가스, 찌개류)
자율 판매 품목	담배, 아이스크림, 음료, 과자, 냉동식품

- * 자율 판매 품목 중 “사용인” 희망 또는 “진해기지사령부”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 하 무인 판매품목을 선정하여 24시간 판매 할 수 있다.
* (세부 가격 별표 첨부)

- 나. 사용인이 특별행사를 위해 사용부대가 지정한 상품의 판매 가격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최소 15일 전에 관리 부대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하며, 판매 촉진을 위한 할인 판매는 자율적으로 시행한다.
5. 사용인은 사용부대의 승인하에 해당 업종의 취급 품목을 판매하며, 민영업소 간 판매품목 중복 시 사용부대가 조정한다.
6. 사용자가 특별행사를 위해 지정 상품 판매 및 가격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일정 기간 조정할 수 있다. 이때, 사용부대와 사용인은 최소 15일 전에 사전 협의해야 한다.
7. 사용부대는 사용인이 공급/판매하는 메뉴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사용인은 사용부대와 상호 협의하여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

판매품목 및 가격

메뉴	가격	메뉴	가격
짜장면		사천탕수육(中)	
간짜장		사천탕수육(大)	
불짜장		제육덮밥	
쟁반짜장		순두부	
짬뽕		갈비탕	
불짬뽕		육개장	
짬뽕밥		해장라면	
삼선짬뽕		돈가스	
삼선짬뽕밥		탕수육(小)	
차돌짬뽕		탕수육(中)	
차돌짬뽕밥		탕수육(大)	
차돌볶음밥		치즈돈가스	
볶음밥		밀 면	
새우볶음밥		냉 면	
잡채밥		비빔밀면	
군만두		비빔냉면	
콩국수			

사용허가 특수조건

제1조(목적)

본 조건은 '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'에 목적을 기반한 해당 국유 재산의 군특수성으로 인해 대표 000(이하 "사용인"이라 한다)에게 사용허가 시 발생하는 사전(개찰전) 인지된 의무이행 사항을 상호 확인·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 및 관리)

- ① 1/2건선거 생활관 내 분식점 운영시간은 10:00 ~ 20:00으로 하며, 매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한다. "부대" 또는 "사용인"이 조정을 희망할 때에는 상호 합의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.
- ② "사용인"은 무단휴업을 할 수 없으며, 개인사정 등으로 임시 휴업이 필요할 경우 5일전까지 "부대"에 임시 휴업일자 및 사유를 통보하여 "부대"승인을 얻은 후 3일 이내로 임시휴업 할 수 있다.
- ③ "사용인"이 운영일,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"부대"에 사전 통보하고 부대복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"사용인"은 "부대"의 허가조건 및 협약서 준수여부 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법규 위반사항 또는 허가조건 및 협약서 미 준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.
 - ㉠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
 - ㉡ 군사기물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국방보안업무 훈령, 보안규정 등 보안관련 법규
 - ㉢ 안전관련 법령 및 고시, 규정
 - ㉣ 해당업종의 영업관련 법령 및 고시 규정
- ⑤ "사용인"은 영업에 필요한 인·허가 절차 등을 "사용인" 부담으로 완료하여야 하며,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"부대"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"사용인"은 낙찰일로부터 부대와 협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⑦ 판매품목에 대한 배달은 하지 않는다.

제3조(판매품목 및 가격)

- ① 판매 세부 품목 및 가격은 부대와의 상호 협약을 통하여 정해야 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은 판매품목, 판매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사항에 대하여 “부대”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, “부대” 및 “사용인”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운영협약서를 수정 및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“사용인”은 운영시간, 품목 및 가격표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④ “사용인”은 판매·서비스 품목에 대하여 “부대”측에 독점권을 요구할 수 없다.
- ⑤ “사용인”이 취급하는 품목의 가격은 시중 유사업종의 가격보다 동일 또는 저렴해야 한다.(가격 통제가 필요한 경우)

제4조(사용료 및 연체료 납부)

- ① 입찰 첫해의 연사용료 납부는 운영협약 체결 후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사용·수익을 시작하기 전, 60일 이내 선납하여야 하며,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고, 사용료의 분할 납부 시 잔액에 대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.

- ② 연 사용료가 1,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 낙찰 후 보증보험협회에 “진해기지사령부”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사용료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, 사용허가서 발급 후 7일 이내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사용료 납부 시 연간 사용료(분할 납부 시 이자포함)의 10%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④ 2차 연도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 (갱신제외)

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	×	$\frac{\text{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액}}{\text{입찰 당시의 재산가액}}$
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- ⑤ 사용료는 지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체납 사용료 및 연체료 등의 징수절차는 「국세징수법」에 의합니다.

- ㉠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7퍼센트
- ㉡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8퍼센트
- ㉢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9퍼센트
- ㉣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: 연 10퍼센트

제5조(계약보증금의 납부)

- ①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, “사용인”은 연 사용료가 1,000만원 미만일 경우 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이 입찰공고 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희망할 때는 대체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“부대”는 “사용인”이 운영협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.

제6조(사용료의 면제 및 조정)

“사용인”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3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조정을 “부대”에 요청할 수 없다.

제7조(군 부대 특수성에 의한 제한사항)

“부대”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군부대 특수성에 의한 사용제한 사유 발생 시 허가시설 이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, “사용인”은 이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“부대”측에 사용료 조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- ① 국가적 재난 선포, 전시예 준하는 사태 발생, 훈련·검열 등 시행
- ② 군기강 확립을 위한 일과 중 장비 이용 제한
- ③ 대비태세 유지, 보안 등의 사유에 의한 야간 운영시간 통제
- ④ 급식 미취식 방지를 위한 병사 이용 제한

제8조(투자설비 등 처리)

“사용인”은 필요한 시설, 장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“부대”의

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(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취소 또는 철회일)까지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.

- ① “사용인”은 필요한 시설, 장비 등을 설치 시 “부대”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하며,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모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이 “부대”의 전기 및 수도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물건의 설치, 변경 또는 수리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“부대”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“부대”는 추가 설치사항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안전관리상 건물 구조, 소방, 전기 등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“사용인”이 설치 또는 비치한 설비, 집기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은 사용인이 설치한 즉시 이를 “부대”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본다.
 - ㉠ 건물 또는 기존 설비에 고착되어 분리할 수 없는 설비 또는 집기류
 - ㉡ “부대”가 제공한 기존설비, 또는 집기류와 혼동되어 구별이 곤란한 것
- ⑤ “사용인”은 모든 설비 또는 집기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유지, 보수, 관리하여야 한다.
- ⑥ 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협약이 종료된 경우 사용인이 설치 또는 비치한 설비, 집기류 중 위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, 집기류 등에 대하여 “부대”에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, 사용인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가져갈 수 있으나 기존 건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. 다만, 사용인이 설치한 설비, 집기류 중 “부대”에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“사용인”은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.

제9조(운영권, 권리의 포기)

- ① “사용인”은 분임재산관리관인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(이하 “시설단”이라 한다)의 허가 없이 운영권 및 기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, 명의변경, 임대, 담보 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- ② “사용인”은 개인사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사용허가 기간 중이라도

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용허가 취소 희망일 2개월 전에 사용허가 해지 신청서를 “부대”에 제출하여야 하며 2개월 동안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
- ③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취소·철회 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일까지 반입물 등을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청구될 수 있고, 시설의 관리·운영상 필요한 경우 “부대”는 반입물을 이동 보관하여 “사용인”에게 보관료를 부담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생 및 안전관리)

- ① “사용인”은 「식품위생법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생 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은 부대 또는 행정관서의 위생·안전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, 위생 및 화재·가스 등의 안전과 관련한 “부대” 또는 관련 행정관서의 시정 요구 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“사용인”은 식중독 사고, 화재사고와 같이 사용인 측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
- ④ “사용인”은 사용허가서 발급 이전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“부대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“사용인”은 소방설비 등 법령에 의해 구비토록 지정된 각종 화재 및 안전 장비들을 반드시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, 그에 필요한 제비용은 “사용인”이 부담한다.
- ⑥ “사용인”은 “부대”의 행정관서의 위생 관련 순찰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위생순찰결과 지적사항 지속 발생시 (유통기한 초과물품 비치 등) “부대”는 협약위반으로 간주, 제 12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제비용의 부담)

- ① “사용인”은 영업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㉠ 전기요금 :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기준(계량기 설치 포함)
 - ㉡ 수도/가스요금 : 지역 수도/가스요금 기준(계량기 설치 포함)

- ② “사용인”은 전기/수도/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한다.
* 낙찰 후 보증보험협회에 “진해기지사령부”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공공요금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, 사용허가서 발급 후 7일 이내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“사용인”은 사용허가시설의 공용면적에 대한 공공요금을 점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.
- ④ “사용인”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 및 처리는 “부대” 방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, 그에 따른 비용은 “사용인”이 부담한다.
- ⑤ 냉·난방시설/화장실 유지 및 청소는 “사용인”이 부담한다.
- ⑥ 민영업체 관리부대(서)는 민간업체 위탁계약시 공공요금(전기, 수도 등) 연체료 부가 및 미납시 단전, 단수 등을 조치한다.

제12조(허가조건 및 운영협약 위반 시 조치)

- ① “부대”는 “사용인”이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.
 - ㉠ 1차 위반: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내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
 - ㉡ 2차 위반 : 1차 주의 조치 관련 내용 불이행 및 기타 위반내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경고 조치
 - ㉢ 3차 위반 : 사용허가 철회
 - * 경고장(서면) 발부 시 “사용인”은 경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7일 이내 제출해야하며, 계획 제출 후 불이행 시에는 사용허가 철회를 검토하고, 경고장의 효력은 조치사항 이행 완료 시 말소된다.

제13조(종업원 관리)

- ① “사용인”은 판매업무 및 사업장 내 재고관리를 위한 판매사원, 기타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고, 종업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종업원부(업체의 경우는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)를 “부대”에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이외의 자가 종사하여서는 안된다. 이 경우 “부대”가 정한 신원조사를 필한 적격자여야 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의 고용인이 고객에게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 될 경우 “사용인”은 연대 책임을 지고 “부대”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- ③ “사용인”이 고용한 종업원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, 산업재해 보상 등 근로계약 상 모든 책임은 “사용인”에게 있으며, “부대”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.

제14조(허가기간의 갱신)

“사용인”은 허가기간 갱신을 희망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“부대”측으로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, “부대”는 특수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사례,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“사용인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(보안의 책임)

- ① “사용인” 및 “사용인”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은 「군사기밀보호법」, 「군사보안업무훈령」, 해당 부대 보안규정 및 기타 군사보안업무에 관한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은 상용정보통신장비(FAX, 컴퓨터, 전화기, 카메라 및 부대 보관 관련 비품) 관련비품 반입 시 반드시 허가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③ “사용인” 또는 그 피고용인의 기지출입 및 기타 물품의 반·출입은 “부대”의 절차에 준하되 해군보안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제16조(여론조사에 대한 조치)

“부대”는 “사용인”의 영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가격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“부대”가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사항을 조치 요구할 시 “사용인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7조(손해배상)

- ① “사용인”은 “사용인” 귀책사유로 이용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, “부대”에서 제공한 건물, 설비, 비품 등을 훼손, 망실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.
- ② “사용인”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* “사용인”은 사용허가 재산에 관하여 손해보험, 재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8조(운영협약서 체결)

- ① “사용인”은 운영일, 운영시간, 판매·서비스 품목 및 가격 등에 대하여 “부대”와 별도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“부대”와 “사용인”은 필요한 경우,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 후 운영협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.
- ③ 운영 개시 후 “사용인”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운영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“부대 복지운영위원회”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“부대”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“부대” 및 “사용인”은 변경된 내용을 운영협약서상에 수정 및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④ “사용인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협약서 체결을 거부할 경우 “부대”는 사용허가를 철회하거나 “부대”가 합리적으로 정한 운영협약서를 부가할 수 있다.

제19조(사용허가 취소·철회 등에 관한 사항)

- ① “부대”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청문 및 부대 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용허가 취소·철회를 의결할 수 있으며, 그 의결에 따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에게 사용허가 취소·철회를 요청한다.
 - ㉠ “사용인”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,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밖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 - ㉡ “사용인”이 사용허가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30조 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 - ㉢ “사용인”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 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,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
 - ㉣ “사용인”이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경우
 - ㉤ “사용인”이 “부대”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
 - ㉥ 사용허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·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
 - ㉦ 군 작전상 비상사태 발생 시

- ㉠ “사용인”이 군사보안 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군사보안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
- ㉡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2조에 의한 3차 위반사항 발생 시
- ㉢ “사용인”이 압류, 가압류, 파산선고, 부도 등의 사유로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- ㉣ “사용인”이 원가 및 인건비 등의 가격인상, 영업수익 감소 등을 빙자하여 운영을 거부할 경우
- ㉤ “사용인”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 등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, 건물 내 폭발물, 인체 유해한 물품 보관행위 적발 시
- ㉥ “부대”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
 - ㉦ 무단휴업 및 영업시간 미준수
 - ㉧ 판매품목 및 가격의 임의 변경
- ㉨ “사용인”이 유언비어를 유포, 부대 내 타 민영업체와의 담합행위 시 “사용인”이 관련된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“사용인”이 행정관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할 인·허가증 및 보건증을 미발급받았거나 인·허가 및 면허취소, 고발,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
- ② 위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·철회 시 “사용인”은 “부대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, “사용인”의 “부대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.

제20조(사용허가기간 만료로 인한 처리)

- ① “사용인”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·철회된 경우 “부대” 및 “새로운 사용인”에게 권리금, 시설투자비,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금도 청구할 수 없다.
- ② “사용인”은 “새로운 사용인”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1조(합의 등에 관한 사항)

- ① 특수조건에서 규정한 모든 협의 또는 합의,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청약문서와 그에 대한 승낙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.

- ② 청약문서에 접수를 위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은 승낙의 뜻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의 또는 합의, 승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 - ㉠ 문서로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두 협의 또는 합의
 - ㉡ 부대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하여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해진 모든 업무 행위

제22조(계약의 해석)

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“부대”와 “사용인” 간의 민사, 기타 법률적 쟁송이 있을 때에 “부대”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2026. . . .

“부대”해군 진해기지사령부 (인)

“사용인” 성 명 : (인)

주 소 :

주민등록번호 :